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7월 3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29일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상모 과장(044-203-5360), 안근영 사무관(044-203-5362),

에너지신산업은 공공기관이 선도한다.

- 제로에너지빌딩,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**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'제로에너지빌딩 도입', '에너지저장장치(이하 ESS)* 설치', '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'** 등을 내용으로 하는 **'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)'을 개정**했다.

* 에너지저장장치(ESS : Energy Storage System) :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,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

□ **「제로에너지빌딩」**은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**공기업(30개)에 대해 권장 수준**으로 추진하고,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,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**'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**하고 '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**'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**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'1등급'에서 **'1++등급'으로 상향 조정**하여 **평균 50%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**된다.

*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10단계(1+++등급~7등급)로 구분되어 있으며, 공공기관은 현재 1등급 이상 의무화

* 현재 공공기관 비주거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인증 건축물은 685개이며, 이중 1++ 등급이상은 113개(16.5%)임(예비인증 기준)

□ **ESS는** 계약전력 1,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**설치 권장 규모**를 기존 '100kW 이상'에서 **'계약전력 5% 이상'**으로 **개정**하여 **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**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,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**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**하기로 했다.

* 계약전력의 5%를 ESS로 설치할 경우 최대전력의 약 16% 감축효과가 있으며,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전력 감축계획(12%)를 초과하는 수치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수준

* 24개 공공기관에서 3년간('15~'17년) 18MWh의 ESS 설비투자할 계획임

○ 또한,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**비상용 예비전원**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**ESS를 우선적으로 적용**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
< 비상발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(ESS)로 대체·병행시 효과 >
- 반응속도가 빠르고, 상시사용 가능
- 빠른 충·방전으로 피크 저감
-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, 공간 활용 유리
- 무정전전원장치(UPS)+비상발전기+수요관리 역할일원화 가능(심야저장·전력최대(피크) 사용을 통해 전기요금(수용가) 인하효과)

□ 그리고,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**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**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'공용차량 관리 규정'의 **차량교체 기준**(최단 운행연한 8년, 최단주행거리 12만km)을 **예외적용**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**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, ESS,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**하도록 유도하여 **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**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상모 과장(☎044-203-5360), 안근영 사무관(☎ 044-203-53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주요 개정 내용**

구 분	현 행	개 정
제로에너지빌딩	-	· 공기업은 연면적 3,000㎡이상 건축물 신축시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 권고
	· 공공기관은 신축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 취득	· 공기업은 '17년부터 신축시 건축물에너지효율 1++등급 의무 취득 < 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(kWh/㎡ · 년) 비교 > * 1등급 : 200이상 260미만 * 1++등급 : 80이상 140미만
에너지저장장치 (ESS)	· 계약전력 1,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ESS 설치 권고	· 계약전력 1,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%이상 규모의 ESS 설치 권고
	-	· 건축물을 신 · 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 권고
	-	· 계약전력 5%이상의 ESS 설치한 시설은 냉난방온도 규제대상에서 제외
전기자동차	-	· 차량연령이 5년 초과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'공용차량 관리규정' 차량 교체 기준* 예외 적용 가능 * 최단운행연한(8년), 최단주행거리(12만km) 이상시 교체